

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 
관리·운영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#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·운영위탁 동의안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17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## 1. 제안이유

구미의 전자정보산업 홍보 및 특성화된 회의·전시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지역전략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위탁재산현황

- 건물명 :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(약칭 GumiCo)
- 위치 :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49
- 규모 : 부지 31,339㎡, 연면적 14,507㎡(지상 2층, 지하 1층)
- 건립비 : 380억원(국비185, 도비80, 시비115)
- 주요시설 : 전시장(1), 회의실(3), 홍보관(3), 디지털역사관(1) 등

나. 위탁기간 : '18. 1. 1 ~ '20. 12. 31(3년간)

### 다. 위탁업무

- 건물 운영/관리 및 전시장, 회의실, 홍보관 대관
- 전시컨벤션 기획/대행 개최 및 유치 마케팅 활동
- 기업회의 수요 발굴 및 개최지원 서비스 강화
- 구미코 홍보 및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인프라 조성

### 3. 운영소요예산 : 1,772백만원

(단위 : 백만원)

| 계     | 인건비   | 일반운영비 | 시설관리비 | 기타<br>(이윤 및 부가세) | 비 고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
| 1,772 | 592.4 | 435.6 | 569   | 175              |     |

### 4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
- 「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#### 나. 예산조치 : 2018년도 예산편성

####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## 재 산 현 황

| 구 분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건 물 |                      | 토 지 |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동 수 | 연면적(m <sup>2</sup> ) | 필 지 | 면적(m <sup>2</sup> ) |     |
| 합계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1   | 14,507               | 1   | 31,339              |     |
| 공<br>유<br>재<br>산 | 행<br>정<br>재<br>산 | 공용재산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공공용재산            | 1   | 14,507               | 1   | 31,339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기업용재산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보존용재산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일<br>반<br>재<br>산 | 행정재산외<br>모든 공유재산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

##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위탁시설 현황

| 구 분   | 시 설 물 내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건 축 물 | 지하1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역사관(1), 홍보관(3), 다목적실(1), 식당(1), 중앙통제실(1), 기계실(1), 전기실(1), 발전기실(1), 관장실(1), VIP실(1), 운영사무실(1) |     |
|       | 지상1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시장(1), 일반사무실(2), 바이어상담실(2), 주최자사무실(2), 접견실(2), 공조실(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| 지상2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회의실(1), 중회의실(1), 소회의실(1), 공조실(4), 하역사무실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기계설비  | 위생설비(343), 소화설비(120), 자동제어설비(6), 도시가스설비(1), 지열냉난방설비(14), 압축공기설비(9), 동파방지열선설비(3), 냉온수기·공조기(17), 냉각탑(2), 저수조(1), 보일러·탱크류(3), FCU·향온향습기(26), 에어컨(34), 전열교환기(4), 부스터·순환·소화·배수펌프(28), 온수관·수처리·살균장치(13), 전기방열기(5), 급배기fan(24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
| 구 분         | 시 설 물 내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전기설비        | 수변전설비(30), 변압기(4), 발전기(1), UPS(1), 승강기(5), Snow Melting(2), 태양광발전설비(2), 누수감지설비(3), 무대기계장치(9), 전력제어(2), 원격검침(1), 조명제어(22), 분전반(101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통신설비        | 통합배선설비(19), CATV설비(6), CCTV설비(34), 방송설비(2), 출입통제설비(82), 주차관제설비(11), 전기시계설비(6), 빌딩안내설비(2), 통합SI(4), 전자교환기(1), LAN설비(5), UPS(1)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소방설비        | R형수신반(1), 무선통신보조설비(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방송설비        | 대회의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음향장비(1), 영상장비(1), 동시통역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| 중회의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음향장비(1), 영상장비(1), 동시통역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| 소회의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음향장비(1), 영상장비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| 바 이 어<br>상 담 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음향장비(2), 영상장비(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부대시설        | 조 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나무 외 38종(9,896주, 6,400본, 3,750POT), 파고라(3), 등의자(14), 분수설비(1), 벽천설비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| 주차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91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| 국 기<br>게양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관리·운영<br>물품 | 가 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썩크대(2), 락커(8), 쇼파(21), 수납장(1), 데스크(1), 옷장(4), 운반구(30), 의자(1,036), 책상(39), 침대·침구(2), 카운터(11), 칸막이(40), 캐비닛(26), 테이블(336) |     |
|             | 사 무<br>용 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컴퓨터(24), 노트북(2), 전화기(30), 프린터(16), 스캐너(3), 복사기(2), 복합기(3), 허브스위치(3), TV(5), 냉장고(5), 파쇄기(1), 이동식스피커세트(2)                 |     |

## □ 조감도 및 위치

### 조감도



### 위치



# 관 계 법 령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- 제19조 (관리위탁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-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.

## □ 지방자치법

-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□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## □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6조(위탁관리) ① 시장은 산업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, 법인,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시장과 협의하여 산업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·개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관을 운영하여야 한다.

| 소관 실 · 과    |       | 과학경제과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입<br>안<br>자 | 과 장   | 남 동 수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담 당   | 안 경 우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담 당 자 | 강 주 희<br>(480-6152) |